

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-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, 일선조합, 중앙회 기능 확립 -
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①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②조합원의 조합경제사업 참여를 유도하며 ③중앙회는 일선조합과 조합원의 경제사업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<조합원-일선 조합-중앙회>가 유기적으로 연계, 판매중심의 농협을 지향토록 하는 한편, 지난해 농업계와 정부가 합의하여 마련한 「경제사업활성화와 신용사업 건전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방안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「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 법률안」을 9월 19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

□ 입법예고한 「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」의 주요내용은

첫째.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확대하고 조합원에 조합선택권을 부여하였다.

- 현행 지역농협 설립 구역은 읍·면단위(동일 구역 2이상 지역농협 설립 불가)로 되어 있어, 조합은 영세한 규모로 독자적인 경제사업 추진이 어렵고, 조합원은 주소·거소에 따라 출자대상 조합이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.
-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·군단위(현행 읍·면단위)로 확대하고, 조합원은 시·군 범위내에서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둘째. 약정조합원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.

- 조합원이 조합 경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합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



수 있도록 조합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·배당 등에서 일반조합원보다 우대하도록 하였다.

- 조합원이 농산물을 조합에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조합은 안정적으로 농산물 판매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, 결과적으로 조합원에게는 더 많은 소득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셋째. 일선조합 및 중앙회의 외부출자한도를 상향 조정하였다.

-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자회사 설립 등에 출자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, 일선조합의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상향 조정(현 : 20% → 조정 : 30%)하였으며,
- 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사업 출자한도를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(현 : 15% → 조정 : 30%)하였다.

넷째.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.

- 일선조합 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'05년 도입한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의 출자자 범위를 조합에서 중앙회, 농업인까지 확대하였다.
- 또한, 의결방식을 현행 '1조합 1표 방식'에서 '출자액에 비례한 의결권 방식'으로 전환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참여 폭을 넓히고 책임경영이 보다 더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,
- 중앙회의 자금지원 대상을 현행 회원조합 외, '조합공동사업법인'과 '회원의 출자 회사'로 확대하여 중앙회와 일선조합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.

다섯째. 중앙회장 선거 등에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대의권을 보강하였다.

- 현재는 중앙회장 선거시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조합에 동일하게 1표의 의

결권이 부여되고, 중앙회 대의원수 배분기준 역시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시·군별 조합수에 따라 배정하고 있다.

- 이는 읍·면단위 조합이 합병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, 앞으로는 중앙회장 선거를 포함, 중앙회 대의원수 배정에 있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.
- 중앙회장 선거 : 조합원수에 기준하여 조합당 1~3표 행사
- 중앙회 대의원수 배정 : 시·군당 조합수 → 시·도당 조합원수

여섯째.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하였다.

- 조합운영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조화(견제와 균형)를 위해 조합의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결과의 평가는 이사회(의장 : 조합장)가 담당하고,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은 전문경영인(상임이사)이 전담하여 집행하는 체제로 유도하기 위해 조합장을 '비상임'으로 전환하였다.

일곱째. 중앙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, 주요 임원을 '인사추천위원회'의 추천을 통해 선임하도록 하였다.

- 중앙회장이 비록 비상임이지만 장기간 재임할 경우(현재는 임기제한이 없음) 사실상 권한이 집중될 수 있어 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.
 -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전담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은 '인사추천위원회'의 추천을 통하여 선임하도록 함
- 「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」은 금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11월까지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.